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체·송금·출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3
2. 보이스피싱 경고 의무화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

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제3항 신설, 제2조의6).

Ⅲ. 검토의견

1.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체·송금·출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 개정안은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 ----- ----- ----- ----- ----- -----하고 고객에게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u>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③ ----- ----- -----

현행	개정안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신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u> <신설> <신설>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u>-----. 1. <u>그 계좌의 개설 거절</u> 2. <u>기존 계좌의 해지</u> 3. <u>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절</u> ④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u>-----. 1. <u>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u> 2. <u>자금의 이체·송금·출금 거절</u>

□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는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마련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는 경우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하여 서류요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도입되었음.

- 이후 2015년 7월부터는 모든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하되, 서류 제출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하였음.
- 다만, 이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¹⁾하기 위한 것으로, 이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²⁾이 제기된 바 있음.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2)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금융거래목적 확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국회는 2024년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제2조의6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및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할 수 있음.
-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함.
- 또한, 금융회사는 개설하려는 계좌의 금융거래목적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대상에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나아가 ① 금융거래 목적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거나 ② 고객의 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③ 고객이 요청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자금의 이체·송금·출금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취지, 개정안 취지의 실효성 담보 여부, 은행권의 자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발급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계좌의 거래 목적³⁾에 따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금

3) 급여 등 수령, 사업자금, 모임통장 등

액 이상의 개별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확인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거래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⁴⁾에서는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 이하의 금액을 수회에 걸쳐 송부하는 거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우회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 4)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22년 9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고액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액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자율적으로 실시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고객의 연령·성별·거래금액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를 고객으로부터 요구하고 있고,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거래에 적용 시 금융거래 편의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2022. 8. 참조

2. 보이스피싱 경고 의무화

- 개정안은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경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생략) <u><신설></u>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행위 발생 시 즉시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자동음성 안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청각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지 않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현행	개정안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 ----- ----- ----- ----- ----- -----하고 고객에게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전기 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④ (생략)	1.·4. (생략) ②~④ (생략)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② 예금·적금·부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함.

○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는 현행법상 본인확인조치를 요하는 경우인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더하

여 이용자가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 나아가 이러한 경고는 자동음성안내를 포함하여 시청각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대출신청 또는 금융상품 해지 등을 하려고 하거나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경고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각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ATM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송금·출금하려는 경우 기기 화면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회사의 경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①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고객 거래 행태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경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② 경고문구 송출 여부는 고객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직접적인 인과성이 높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경고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8